

대전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가단1292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31.1) 체결된 증여계약을 13,862,83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862,8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사 성기권

별지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 ,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 콘크리트조

면 적 : 11 층 호 84.96㎡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 17907㎡

2)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 30478㎡

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 1052㎡

대지권의 종류 : 1, 2, 3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49437 분의 36.937

- 관할등기소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

청구 원인

1. 피보전 채권의 존재

가. 원고는 본점 소재지에서 신용카드 발행 및 관리업무 등 이와 관련된 부대업무를 하는 신용카드 회사이고, 소외 C은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으로서 채권자에 대하여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입니다.

나. 그러므로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20 차전 119271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20. 10. 16."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9,989,933원과 그 중 금 200원에 대하여는 2020.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6%, 금 1,884,804원에 대하여는 2020. 10. 16.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4%, 금 2,714,860원에 대하여는 2020. 10. 16.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23%, 금 4,931,678원에 대하여는 2020. 10. 16.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22.4%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있었고, 동 결정정본이 소외 C에게 송달되어 2020. 12. 24. 확정되었습니다.

다. 그러나 소외 C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2022. 7. 25. 현재 아래와 같이 변제할 금액이 13,862,838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 래

채권의 합계 : 금13,862,838원

(원리금 : 금9,989,933원, 지연손해금 계 : 금3,872,905원)

채권의 내역

원리금액 : 금9,989,933원

위 지연손해금 : 금3,872,905원

[위 청구금액중 금 200원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2022. 7. 25.까지(648일) 연16%(금56원)의, 금 1,884,804원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2022. 7. 25.까지(648일) 연24%(금803,081원)의, 금 2,714,860원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2022. 7. 25.까지(648일) 연23%(금1,108,555원)의, 금 4,931,678원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2022. 7. 25.까지(648일) 연22.4%(금1,961,213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

가. 소외 C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한편, 소외 C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20. 3. 31. 소유권자로서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20. 3. 31.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접수 제6733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하였습니다.

나. 이때 소외 C은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다. 그리고 원고에 대한 소외 C은 신용카드이용대금등은 위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사용되었고 그 무렵부터 연체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당연히 원고 취소권의 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라. 원고에 대하여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채무를 지게 된 소외 C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그 부동산만이 원고의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인데, 소외 C은 자신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의 자녀인 피고에게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입니다.

바. 결국 이러한 점을 볼 때, 소외 C과 피고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입증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외 C과 피고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사해행위로 인한 가액배상 청구

그러므로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소유권을 취득한 후인 2021. 9. 28. 대전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22. 6. 13. 매각절차에서 소외 E이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하므로 원상회복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목적물의 가액 범위내에서 원고의 청구채권을 가액배상으로 청구하고자 합니다.(피고는 위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잉여금으로 38,693,642원을 배당받음)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목적물의 가액 범위내에서 원고의 청구채권을 가액배상으로 청구하고자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인 귀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1) 원고는 청구취지에 증여계약 체결일을 2021. 10. 1.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부동산등기부를 보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